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진정권, 조사 및 구제 등〉
■ 김병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00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군인권보호관의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명시(안 제42조)	3
2.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진정권, 조사 및 구제 규정 신설 (안 제42조의2, 제42조의3)	5
3. 군 대외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규정 신설 (안 제42조의2, 제42조의3)	10
4. 군 내부 진정절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규정 (안 제44조)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병주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4. 7. 10.
3. 회 부 일 : 2024.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군에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대한 진정권을 보장하고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국방부와 각 군 또한 군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국방부훈령인 「군 인권업무훈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으며, 기관 간 업무협조와 조사 활동에 필요한 여건도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인권 침해에 대한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군인권보호관의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명시(안 제42조)

□ 개정안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한 군인권보호관의 소속을 국가인권위원회로 명시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u>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u> ② (생 략)	제42조(군인권보호관) ① ----- ----- <u>국가인권위원회에</u> <u>군인권보호관을 둔다.</u>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42조는 군인권보호관의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의 소속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군인권보호관은 2022년 7월 출범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하고, 소위원회로 군인권보호위원회와 사무처에 군인권보호국을 두어 운영되고 있으며,¹⁾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군인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한다.

③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로 본다.

제16조(사무처)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둔다.

부대방문조사권, 자료제출권, 사망 사건 시 등의 권한을 갖고 군인권침해 예방 및 장병 인권보호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음²⁾.

□ 본래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故 윤일병 사건³⁾을 계기로 2016년 현행법 제42조에 군인권보호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이후, 군인권보호관의 소속,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중 어느 기관의 소속을 할 것인지 여부와 방문조사권, 자료요청권 등과 같은 권한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5년 이상 지연되다가,

2021년 12월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하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었음.⁴⁾

□ 이에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같이 군인권보호관의 소속을 국가인권위원회로 명시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군인권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 ①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의6(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수사의 입회)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등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조사나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면 그 입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의8(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6조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국가기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 수사가 종결된 이후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다.

3) 2014년 4월 7일, 대한민국 육군 제28보병사단 의무대에서 선임 병사들이 후임 병사인 윤 일병을 집단 구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 사건.

4) 국회입법조사처, 「군 인권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NARS입법·정책』, 2021.12.16.

침해 예방 및 장병 인권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군인권보호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는 입장임.

2.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진정권, 조사 및 구제 규정 신설 (안 제42조의2, 제42조의3)

□ 개정안은 군인(군인이었던 자 포함)의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한 진정 제기, 진정 사건의 조사방법 및 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2조의2(군 내 기본권 침해의 진정) 군인(군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이 복무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권 침해 등의 경우(이하 “군 내 기본권 침해”라 한다) 또는 다른 군인의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각 부대·기관의 장(이하 이 장에서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정할 수 있다. 1. 제3장의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2.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상대방이 된 경우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군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신 설>	제42조의3(군 내 기본권 침해의 조사 및 구제) ① 국방부장관등은 제42조의2에 따른 진정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1. <u>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및 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u> 2. <u>진정 사건과 관련된 부대·기관·부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u> 3. <u>그 밖에 진정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u> ② <u>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기관·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u> ③ <u>국방부장관등은 별도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군내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침해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u> ④ <u>국방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진정 사건의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직권 조사 결과 기본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권리구제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이행하거나 관계 부대·기관·부서의 장에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⑤ <u>국방부장관등으로부터 제4항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받은 부대·기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u> ⑥ <u>군내 기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⑦ <u>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구제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현행법은 군 내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한 군 내부 진정절차,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방법 및 구제조치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부재함.

현재 군 내부 진정절차는 「군 인권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진정인은 자신 또는 제3자가 군 내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유로 국방부장관 등에게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⁵⁾

진정 사건이나 인권상담 접수 시 인권상담관의 상담을 통해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진정사건으로 처리하여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구제조치를 하고 있음.⁶⁾

5) 「군 인권업무 훈령」 제2조(정의) 6.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군내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사유로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또는 인권상담관을 운영하는 부대장(이하 "국방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제36조(진정의 접수) ①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킴이시스템을 통하여 국방부장관 등에게 접수할 수 있다.

6) 「군 인권업무 훈령」 제29조(인권상담관 임명 등) ①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사단급, 전단급, 비행단급 이상 부대는 인권상담관을 운영하되,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단급, 전대급 부대에 인권상담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상담관은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또는 부대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소속인원 중 군법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부대의 인권상담관이 인권상담업무를 수행한다.

제41조(직권조사) 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군내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5조(조사의 방법) ①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또는 인권상담관을 운영하는 부대장 및 사건을 이송받은 부대(기관)의 장(이하 "진정조사부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 요구, 질문에 대한 답변요구, 또는 진술청취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사실 및 정보의 조회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제50조(인용 및 구제조치) ① 진정조사부대장은 사건의 조사 결과 군내 인권침해가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군내 인권침해의 중지와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2. 같은 또는 유사한 군내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군내 인권침해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4. 피진정인 또는 군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주의 및 경고조치 또는 수사·징계 의뢰

5.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국가배상이나 법률구조 등의 안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진정 사건을 조사 및 처리에 있어 업무 수행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 협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진정 조사 시 절차의 적법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군인이 자신 또는 제3자의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진정할 수 있고, 진정 사건 조사 시 진술 청취, 자료제출, 현장 조사 및 직권 조사 등 조사방법 및 구제조치를 법률에 규정 하여, 현재 훈령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진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형사 및 징계 사건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의뢰하는 조치를 하고⁷⁾,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제조치, 재발방지 조치, 관련 제도 개선 등 광범위한 조치가 가능하기에 군 내부에서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에게 군 내부 진정절차는 효과적인 권리 보호 수단임.

개정안은 군 내부 진정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조사 협조와 진정 사건 조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7) 「군 인권업무 훈령」 제50조(인용 및 구제조치) ① 진정조사부대장은 사건의 조사 결과 군내 인권침해가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피진정인 또는 군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주의 및 경고조치 또는 수사·징계 의뢰

□ 한편, 안 제42조의2는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각 부대·기관의 장에게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모든 부대·기관에서 진정을 접수하여 진정 사건을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인권상담관과 같은 진정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은 부대는 진정사건 조사 및 구제조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현재 「군 인권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군 내부 진정절차는 진정인이 ‘인권상담관을 운영하는 부대장’에게 진정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⁹⁾

□ 참고로, 국방부는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해 진정할 수 있는 권리와 조사 및 구제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 수행의 용이성 보장, 업무처리의 적법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8) 국방부에 따르면, 진정사건 조사 시에는 출석 요구, 진술서 제출 요청, 사실조회, 현장조사 등 준사법적 행위가 필요하고, 조사방법의 적법성에 대한 민원 소지가 있고, 구제조치 시에는 수사·징계 의뢰, 국가배상이나 법률구조 등의 안내 등이 필요하므로 인권상담관 같은 전문적 법률 지식이 있는 자에 의한 판단 및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9) 「군 인권업무 훈령」 제2조(정의) 본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군내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유로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또는 **인권상담관을 운영하는 부대장**(이하 "국방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3. 군 대외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규정 신설(안 제42조의4)

□ 개정안은 군 내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한 구제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42조의4(군 대외기관을 통한 구제) 군인(군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군 내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43조(신고의무 등) ① (생략) ② 군인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제43조(신고의무)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 현행법 제43조제1항은 군인에게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¹⁰⁾, 제2항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 대외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인 피해자가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할 경우,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조사하여 구제조치를 이행하거나 제도나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권고조치하고 있음.¹¹⁾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사유로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 제43조 제2항은 군 대외기관의 진정 사유를 제1항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사항인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 등 통상 형사사건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신고의무 등)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군인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한다.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또한, 현행법 제43조제2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는 할 수 있지만¹²⁾ 진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통한 구제 절차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그리고 현행법 제43조는 ‘신고의무 등’에 관한 조항인데 제1항은 군 내부기관을 통한 신고의무에 관한 조항이지만 제2항은 군 대외기관을 통한 구제절차에 관한 조항이라 내용상 연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과,

군 대외기관을 통한 구제에 관한 내용이 조문 제목상 ‘제43조(신고의무 등)’에 포함되어 있어서 동 구제절차가 강조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군 대외기관을 통한 구제 규정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알기 쉽게 명확히 하고, 현행법 제43조의 신고의무 사유보다 넓은 범위의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통해 피해자인 군인의 기본권 보호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진정 대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개정안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등 군 대외기관을 통한 권리구제수단에 대해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여 알기 쉽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범위에 안 제42조의2, 안 제42조의4 신설에 따른 군 내 진정절차 등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illegible]

- 14 -

진정을 제기한 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비밀로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안 제42조의2는 군인에게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등에게 절차에 따라 진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42조의4는 현행법 제43조제2항이 법 체계상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된 것임.

한편, 현재 「군 인권업무 훈령」 제54조¹³⁾에서 군 내부 진정절차를 이용하는 진정인에 대한 신분보호 및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음.

- 이에 개정안은 제42조의2에 따라 군 내부 진정절차를 이용하는 자와 현행법 제43조에서 분리된 제42조의4에 따라 군 대외기관을 통한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추가하여 비밀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현행법이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진정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비밀보장하는 것과 같이, 군 내부 진정절차를 이용하는 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또한 비밀보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차 가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진정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13) 「군 인권업무 훈령」 제54조(진정인의 신분보호 및 비밀보장) ⑤ 누구든지 진정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정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방부는 군 내부 진정절차를 이용하는 진정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